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시장

나. 의안번호 : 제2656호

다. 제출일자 : 2021. 08. 11.

라. 회부일자 : 2021. 08. 18.

## 2. 제안사유

- 조례에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형사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처분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 시점만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수사기관에 범상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형사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점을 명시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절차상 또는 형사절차상의 불복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6. ~ 5. 26.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를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에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도 포함시켜 형사절차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도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 의견

- 현행 조례<sup>1)</sup>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자치구와 수사기관에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동 조항 단서 규정에서는 포상금 지급시기를 자치구에 관련법 위반사항을 신고한<sup>2)</sup> 경우로 한정하여 행정처분이 완료

1)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위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3.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관련법 위반사항 중 자치구에 신고 대상

- 「자동차관리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된 경우만 규정하고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sup>3)</sup>에는 별도의 지급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중 형사절차 적용이 필요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행,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시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및 절차

위 반 행 위(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신고/고발기관	처리절차	자동차관리법 처분기준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법 제53조)	수사기관	형사절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위반(법 제53조)	자치구	행정처분 절차	등록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3.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수사기관	형사절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법 제57조제3항제2호(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수사기관	형사절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수사기관	형사절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법 제24조의2제1항(자동차사용자)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수사기관	형사절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관련법 위반사항 중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대상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중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형사절차가 완료된 시점을 포상금 지급시기로 추가함으로써 조문 해석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서울시의 신고포상금 지급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